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25 선고 2020가단5493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주식회사 C

변론 종결 2020. 6. 18.

판결 선고 2020. 6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07,051,927원 및 그 중 142,884,199원에 대하여 2019. 12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2.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판사윤양지

별지